## 환경보건법 시행규칙



[시행 2024. 3. 15.] [환경부령 제1082호, 2024. 3. 11., 타법개정]

환경부 (환경보건정책과) 044-201-6762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환경보건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환경성질환의 종류) 「환경보건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"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4. 3. 13.,

2014. 12. 24., 2016. 12. 22., 2018. 1. 17.>

- 1. 「물환경보전법」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
- 2. 「화학물질관리법」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,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
- 3.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
- 4.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
- 5.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및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
- 6. 가습기살균제[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(製劑) 또는 물질을 말한다]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(「화학물질관리법」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로 고시된 것만 해당한다)로 인한 폐질환

제3조(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)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- 제4조(조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) ① 국립환경과학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(이하 "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까지 조사지역, 조사기간,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・도지사"라 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  - 1. 기초조사: 조사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말
  - 2. 정밀조사: 조사를 실시하려는 날의 90일 전
  -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시・도지사는 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.
- **제5조(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)** ①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조사의 목적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.
  -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조사 대상자의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조사지역에서 조사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.
  - ③ 원장은 선정된 조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.
- 제6조(조사의 방법) ① 조사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설문, 생체 시료(試料)의 채취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한다.
  -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
- 제7조(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) 원장은 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를 지원할 사람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8조(조사 결과의 공표) 원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- 제9조(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및 활용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 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선정한 후, 자료 확보의 용이성과 국가 간 및 지역 간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세부 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환경보건 지표를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·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, 환경보건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**제10조(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)** 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별표 2 제4호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별표 2와 같다.
- 제11조(시설의 개선명령 등) ① 시장・군수・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(이하 "개선명령"이라 한다)해야 한다. 이 경우 시장・군수・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에 개선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 <개정 2013. 7. 2., 2016. 7. 27, 2020. 12. 31, 2022. 4. 7.>
  - 1. 시장·군수·구청장: 영 제1조의2제1호(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), 제2호,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
  - 2. 교육감: 영 제1조의2제1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,「초·중등교육법」제 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, 영 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
  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개선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개정 2020, 12, 31.>
  - ③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20. 12. 31., 2022. 4. 7.>
  - ④ 시장・군수・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를 받은 경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<개정 2020. 12. 31.>
- **제11조의2(확인검사의 시기, 방법 및 절차 등)** ①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,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(이하 "확인검사"라 한다)를 받아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·검사 기관(이하 "검사기관"이라한다)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20. 12. 31,, 2022. 4. 7.>
  -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,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.<개정 2020. 12. 31, 2022. 4. 7.>
  - ④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, 그 세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9. 12. 20., 2024. 2. 16.>
  - 1. 기본검사: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맨눈으로 확인하거나 중금속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검사하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한다.
  - 2. 정밀검사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,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가. 기본검사 결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나, 기본검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
- ⑤ 법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 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, 마감재료,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및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(이하 "도료등 "이라 한다)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료등을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선한 어린이활동공간을 말한다. 이경우 증축한 경우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, 수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한다.<개정 2024. 2. 16.>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14. 9. 25.]

[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<2014. 9. 25.>]

- 제11조의3(확인검사 이행명령) ① 시장・군수・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(이하 "확인검사명령"이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한다. 이 경우 시장・군수・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확인검사명령서에 확인검사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31, 2022. 4. 7.>
  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확인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개정 2020. 12. 31.>
  - ③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에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・군수・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20. 12. 31., 2022. 4. 7.>
  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기간이 끝나거나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.<개정 2020. 12. 31.>

[본조신설 2016, 7, 27.]

[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<2016. 7. 27.>]

- **제11조의4(검사기관의 지정 등)**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"이란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  - 1. 「국가표준기본법」제23조에 따라 시험・검사기관으로 인정된 기관
  - 2. 「환경분야 시험・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・검사기관
  - 3.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시험・검사기관
  - ②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·검사 기관(이하 "검사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14.
  - 9. 25., 2016. 7. 27., 2022. 4. 7.>
  - 1.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  - 2. 사업계획서
  -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원장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7. 27.>
  -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 2호의8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.<개정 2014. 9. 25., 2016. 7. 27., 2022. 4. 7.>
  - 1. 검사기관의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

- 2. 지정번호
- 3. 지정 연월일
- 4.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12. 8. 2.]

[제11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<2016. 7. 27.>]

제11조의5(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) ① 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- 1.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
- 2. 기관명 또는 대표자
- 3. 기술인력 및 시설
- ②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9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14. 9. 25., 2016. 7. 27., 2022. 4. 7.>
-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원장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.<개정 2014. 9. 25., 2016. 7. 27., 2022. 4. 7.>
-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된 사항이 제11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9. 25., 2016. 7. 27.>

[본조신설 2012. 8. 2.]

[제11조의4에서 이동,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7로 이동 <2016. 7. 27.>]

제11조의6(검사기관의 준수사항)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.

[본조신설 2016. 7. 27.]

[종전 제11조의6은 제11조의9로 이동 <2016. 7. 27.>]

제11조의7(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) ① 원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7. 27.>

- 1.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일 및 업무정지기간
- 2. 검사기관 지정번호
- 3. 기관명 또는 대표자
- 4.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
- ②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<개정 2016. 7. 27.>

[본조신설 2012, 8, 2,]

[제11조의5에서 이동 <2016. 7. 27.>]

제11조의8(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 및 절차 등)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안심 시설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이어야 한다. <개정 2016. 12. 22.>

- 1. 「환경보건법」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
- 2.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(영 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은「학교보건법」제4조에 따른 교사(校舍)안에서의 공기질유지기준)
- 3. 「석면안전관리법」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 아닐 것
- 4.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「환경보건법」,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또 는「석면안전관리법」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16. 12. 22., 2022. 4. 7.>
- 1.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관련 성적서
- 2. 환경안심 인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
- 3.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서
-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인증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인증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의11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, 별지 제2호의12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 현판을 내줘야 한다.<개정 2022, 4, 7.>
- ⑤ 제3항에 따른 환경안심 시설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, 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되, 갱신에 필요한 절차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.
-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안심 인증시설에 대하여 유효기간 내 1회이상 제1항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, 최초 확인은 인증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시한다.
- ⑧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반납하여야 한다.
-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안심 시설의 인증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16. 7. 27.]

- 제11조의9(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)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13서식의 판매중지·회수 조치결과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2. 4. 7.>
  -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. 12. 31.]

[종전 제11조의9는 제11조의10으로 이동 <2020. 12. 31.>]

제11조의10(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등)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호의14서식에 따른다.

- ② 영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치계획서는 별지 제2호의15서식에 따른다.
- ③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16서식에 따른다.
- ④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17서식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4. 2. 16.]

[종전 제11조의10은 제11조의11로 이동 <2024. 2. 16.>]

- 제11조의11(자가관리계획의 수립) 법 제24조의3제1항의 자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4. 2. 16.>
  - 1. 사업자 일반현황
  - 2. 환경유해인자의 사용현황
  - 3.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 판매를 줄이기 위한 방법
  - 4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·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13. 7. 2.]

## [제11조의10에서 이동 <2024. 2. 16.>]

- 제12조(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) ① 영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7. 2., 2016. 7. 27.>
  - 1. 연구인력 현황
  - 2.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장비 등의 확보 현황
  - 3. 환경보건 분야 연구 실적
  - 4. 유효기간동안의 사업계획서
  - 5. 환경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
  - 6. 협력기관과의 협력계획서
  - 7.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
  - 8. 그 밖에 환경보건센터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
  -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또는 재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6. 7. 27.>
- 제13조(지정서의 발급 등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또는 재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,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을 내어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3. 7. 2., 2016. 7. 27.>
  -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와 지정 현판을 반납하여 야 한다.<개정 2013. 7. 2.>
- **제13조의2(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)** ① 법 제26조의2제2항의 환경보건센터평가단(이하 "평가단"이라 한다 )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평가단의 단장은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으로 한다.<개정 2021, 6, 8,>
  - ③ 평가단의 단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 - ④ 평가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

[본조신설 2013. 7. 2.]

- 제13조의3(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영 제22조제4항제5호에 따라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(이하 "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·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.
  - 1.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종류, 건강과 생태계 영향,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
  - 2.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관한 정보
  - 3. 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및 위해성관리 등에 관한 정보
  - 4. 법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등에 관한 정보
  - 5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정책 지원 등과 관련된 정보

[본조신설 2016. 7. 27.]

- **제14조(보고와 검사 등)**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1. 11. 14., 2016. 7. 27.>
  - 1.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는 경우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
- 3.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
- 4.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확인검사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
- 5.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
- 6.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적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경우
- 7.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
- 8.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
- 9.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

제15조(수수료) 법 제29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.

[본조신설 2012. 8. 2.]

**부칙** <제1082호,2024. 3. 11.>(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)

**제1조**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제2호나목 중 "목질판상제품"을 각각 "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"으로 한다.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